

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32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4월 6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면적(m ²)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지하1층,지상3층	1,092.62

○ 위탁사무내용

- 사례관리: 보호 및 사례개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재가서비스, 자활지원 등
- 지역조직화: 지역조직화(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시설물과 복지관 재산의 유지 관리
- 기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

○ 위탁기간: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유찰2회시 수의협약 가능)

○ 소요예산: 연간 1,060,397천원(시비 100%)

나. 추진일정

○ 2021년 5월 : 공개모집 계획수립

○ 2021년 6월~7월: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완료

○ 2021년 8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21년 8월~9월: 위원회 집합심사 및 수탁법인 결정

○ 2021년 9월 :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부칙 제3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굿네이버스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10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위탁 사무에 대해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운영의 전문성과 사회복지관의 운영평가 결과,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제2조에 의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제외 대상

-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수탁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상대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강서구의회 대표 2명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⑦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